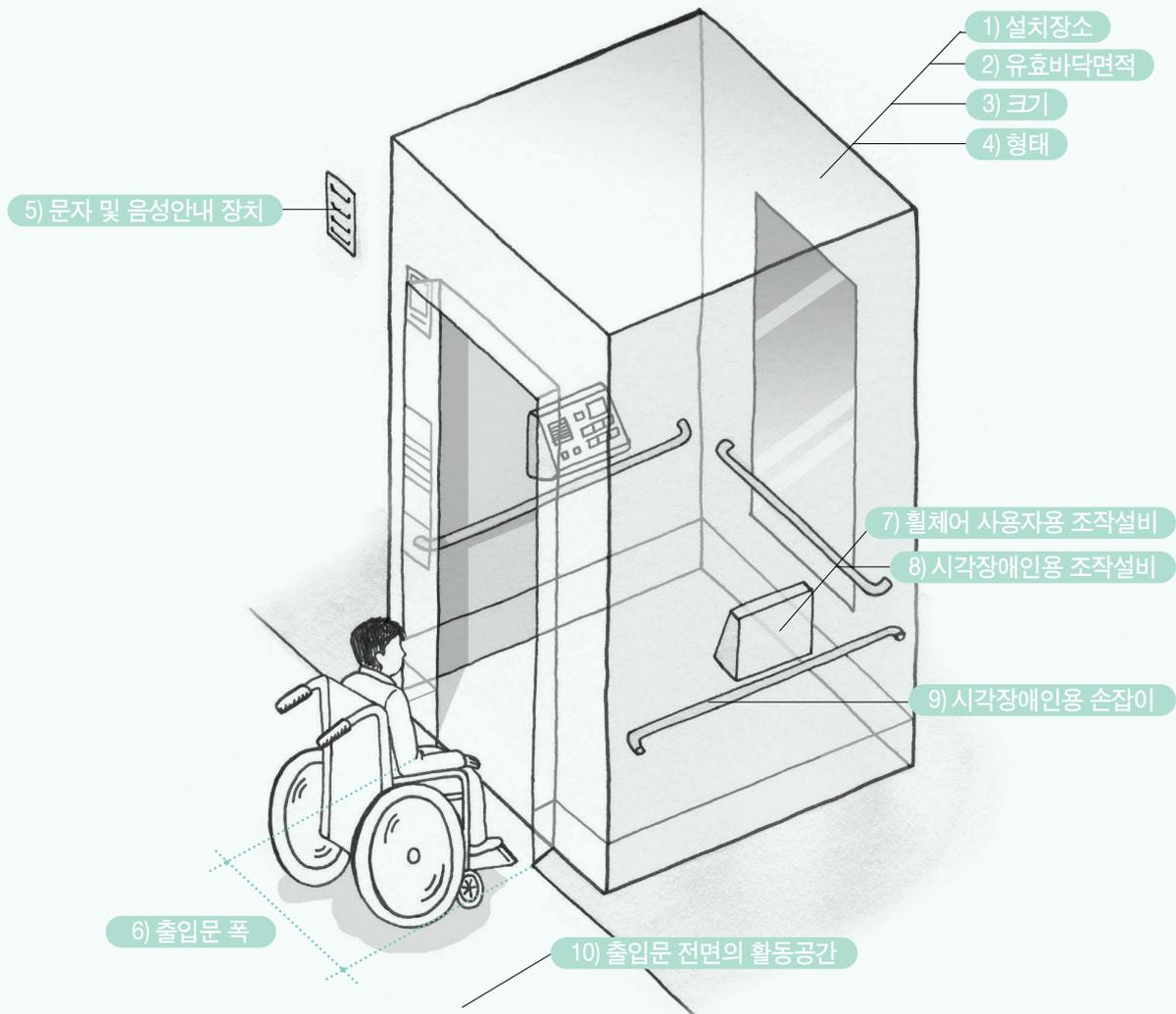


## 8. 장애인용 승강기



### ■ 설치원칙

승강기는 모든 사람이 이용가능한 대표적인 편의시설이다. 특히 계단을 이용하기 불가능한 이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수직이동 수단이다. 따라서 층 규모와 관계없이 층간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설치해야 한다. 그리고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쉽고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.

### ■ 설치요점

- 주출입구에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한다.
- 휠체어, 어린이, 노인, 시각장애인 등 모두가 이용가능하도록 배려한다.
- 표준형 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보다는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우선 설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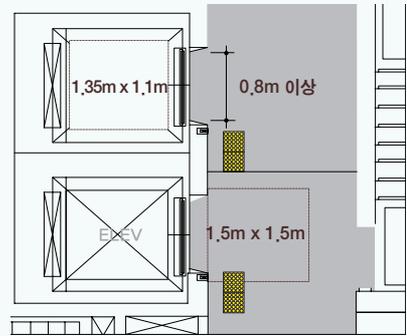
1) 설치장소

- 주출입구 및 통로에서 인지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.



2) 유효바닥면적

-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.1m 이상, 길이 1.35m 이상으로 해야 한다.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.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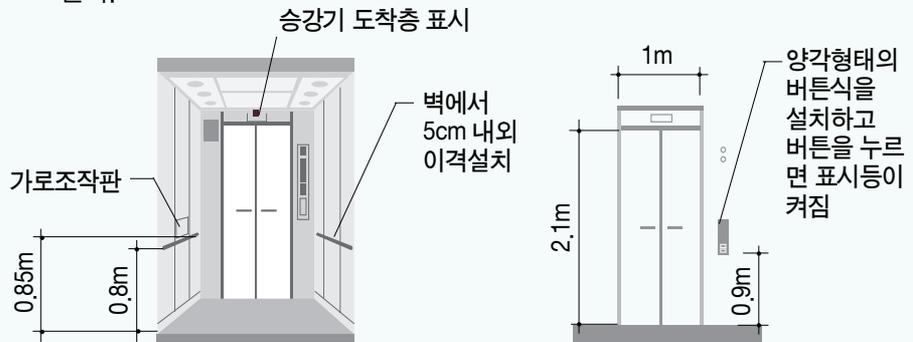


3) 크기

- 휠체어를 위한 측면 조작판이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유효바닥면적이 1.4m x 1.4m 이상이어야 한다.

4) 형태

- 유효바닥면적이 1.4m x 1.4m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의 회전이 불가능하므로 측면조작판, 출입문 관찰 후면거울, 관통형 출입문 등 적절한 형태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.



5) 문자 및 음성 안내장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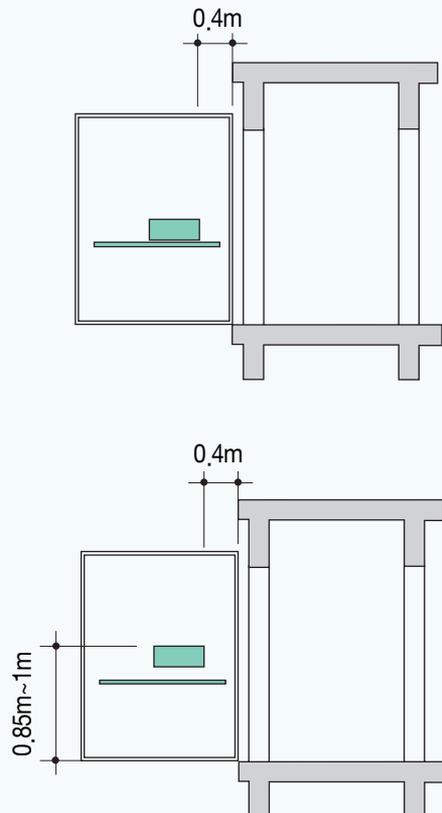
- 승강기 내부에는 승강기의 진행방향과 정지예정층, 현재의 위치 등에 대한 문자안내 표시장치 및 음성안내표시를 해야 한다.
- 각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-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뒤 열림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
## 6) 출입문 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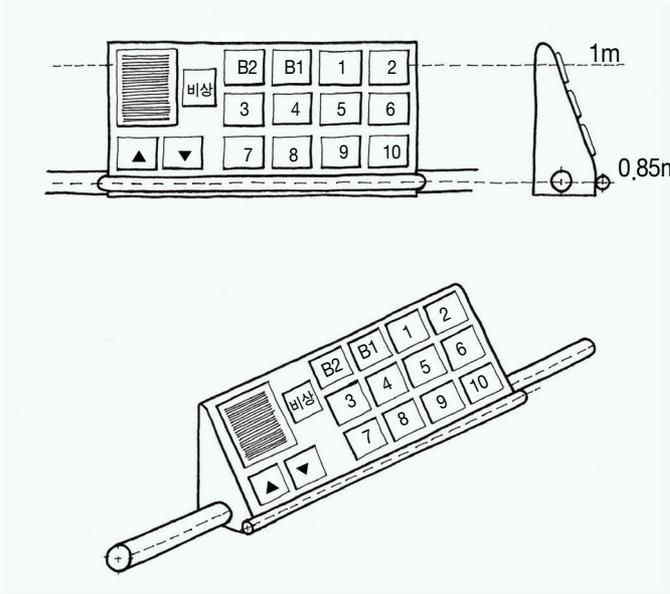
-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은 0.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턱과 틈은 2cm이하여야 한다.
- 감지기식 개폐장치의 감지높이범위는 0.3m~1.4m이다.

## 7) 휠체어사용자용 조작설비

-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기는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 형으로 설치하고,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85m내외로 한다. 다만, 승강기의 유효 바닥면적이 1.4m×1.4m이상인 경우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.
- 조작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85m~1m내에 조작버튼이 위치하도록 가로방향으로 설치한다.
- 출입구 외부조작 설비는 높이 0.85m±0.5cm에 설치한다.
- 조작기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고 가로형은 밀면이 25°정도 들어 올려진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.
- 층표시 외에도 반드시 비상호출 및 상호 통화장치용 버튼이 있어야 한다.



▲ 내부조작기 설치위치



8) 시각장애이용  
조작설비

-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작판이 점자표시는 출입문 우측에 있는 주조작판에 설치한다.
- 점자조작표시는 승강기 내외부 모두 반드시 조작버튼의 우측면에 나란히 부착한다.
- 출입문 개폐, 비상호출, 상호통화장치 등에도 점자표시를 해야 한다.

9) 시각장애이용  
손잡이

- 직경 3.2cm~3.8cm의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.
-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좌 우측면에만 손잡이를 설치할 수도 있다.

10) 출입문 전면의  
활동공간

- 출입문 전면에는 휠체어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최소한 1.5m×1.5m의 활동공간이 있어야 한다.
- 휠체어의 활동공간과 겹치지 않도록 승강기 호출버튼 0.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해야 한다.

